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시 그 토지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과 대행계약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방법 신설(안 제6조의2)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정함에 따라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안 제15조의4제3항)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연간 평가계획 수립·서류심사·현장평가 등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이 가능한 자에 대한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별표 4)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에 관한 규정(법 제38조)과 업 등록에 관한 법 조문(법 제51조) 정비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으로 규정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중 별도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가능 분야를 수질분야로 명확히 규정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한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비목 정비

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의 수리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4호의4·제4호의7)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속·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련 지위승계 신고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마.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3항제9호다목)

- 강우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기록 의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바.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 위반행위란 아목)

- 강우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 등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사. 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22.1.6.)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15조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의3제2항·제5항, 제15조의4제1항·제2항, 별표 8 제2호라목·마목·자목(종전 아목)·하목(종전 너목)·러목(종전 더목))
-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제15조제3항·제6항,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시설”은 “하수도시설”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각각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기록·보관하여야”를 “기록·보관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4”를 “법 제19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③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 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
2.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공중”을 “공사종류”로 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1조제2항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제4호의5 및 제4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다목 중 “법 제80조제4항제3호·제3호의2”를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제3호·제3호의2”로 한다.

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의7.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별표 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인력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비고 중 “:”을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1호 중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기술인력”으로, “경우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다목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제2호라목 및 마목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각각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아목부터 타목을 자목부터 파목으로, 자목(종전의 아목) 위반행위란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보전”을 “보존”으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u>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u>	50	70	100

같은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너목을 삭제하며, 종전의 파목부터 거목을 거목부터 더목으로, 종전의 더목부터 구목을 러목부터 누목으로, 러목(종전의 더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u>법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u>	<u>법 제80조제4항제4호의2</u>	50	7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u> ① <u>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준용한다.</u> 이 경우 “수도시설”은 “하수도시설”로 본다. ② <u>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u>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① (생략) ② 삭제 ③ <u>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u>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9조제4항</u>----- ----- ----- ----- ---- <u>실시해야</u> ----- ----- ----- ----- ----- <u>실시해</u>

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야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9조제4항-----

-----.

⑥ 법 제19조제4항-----

----- 기록·보관해야 ----.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

----- 체결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9조의5제4항-----

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삭제>

③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 업무를 위한 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
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
사,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
의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

2.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
업·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
다.

4와 같다.

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삭 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4의3. (생략)

<신 설>

4의4. · 4의5. (생략)

<신 설>

5. 삭 제

6. ~ 8. (생략)

<삭 제>

③ ----- 대통령령으로 ----- 공사종류-----

-----.

제41조(권한의 위임)

② -----

--.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의5. · 4의6. (현행 제4호의4 및 제4호의5와 같음)

4의7.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나. (생략) 다. <u>법 제80조제4항제3호·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u>에 관한 사항	9.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제3호·제3호의2</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021